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맹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812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0. 21.

발 의 자 : 박맹우 · 김도읍 · 이종명

金成泰 · 정갑윤 · 이채익

박명재 · 이종배 · 최연혜

윤한홍 · 곽대훈 · 강길부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화물자동차는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크고 적재화물의 무게로 중량이 무거워 추돌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전능력, 운전경력, 교통법규 준수 등에 있어 일반 운전자에 비해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.

이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운전,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및 음주운전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등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5년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3호).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호 중 “제44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한”을 “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화물운송 종사자격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①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한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에 대하여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	제9조(결격사유) -----
1. · 2. (생 략)	-----
3.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 공고일 전 또는 같은 항제4호에 따른 교육 공고일 전 5년간 「도로교통법」 <u>제44조 제1항</u> 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	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<u>제93조</u> <u>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</u> <u>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-</u> ----